

1. 개정이유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업무 위탁수행기관 변경 등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을 기존 위탁수행기관인 보험관련단체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, 국토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자동차정책관으로 변경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예규 제 호

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
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관리관”을 “자동차정책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보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”을 “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기금관리 책임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<u>자동차관리관</u>이 되고,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<u>보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 <u>자동차정책관</u>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의 기금관리 책임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